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과 장 박호형 042-481-5265 사무관 박재원 042-481-5377
	2016년 9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8월 31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불사용취소심판제도 개선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전부개정 상표법')이 오늘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다.

상표법 주요 개정

-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
-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미사용 상표 취소절차 간소화
- (상표권 소멸 후 1년 출원금지 규정 삭제)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상표출원 금지 규정을 삭제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 이번에 시행되는 상표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¹⁾와 서비스표²⁾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해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 이는 미국·유럽 등의 표현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그동안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등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해 저장상표³⁾의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③ 상표권 소멸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 삭제

-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이 삭제된다. 이는 해당 규정에 따라 거절을 받은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1) 상표는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ex) 아모레퍼시픽의 헤라(상품: 메이크업 화장품)

2)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ex)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서비스업: 화장품구판매대행업)

3) 저장상표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를 등록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상표를 말한다.

4 그 밖의 개정사항

- 아울러, 마드리드 의정서⁴⁾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전부개정 상표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도 전부개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의 선순환으로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특허청은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제도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상표제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박재원 사무관(☎ 042-481-53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제도는 일국에 상표를 출원하면서 보호받기 원하는 복수 국가를 지정하면 복수에 국가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

"달라지는 주요 상표제도"

[2016.9.1. 시행]

<2016.9. 상표심사정책과>

변경 항목	변경 내용		적용 시점
	종 전	변 경	
1.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법 제2조(정의)	상표란 생산·가공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등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표장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결합 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 관련 상품 외에는 서비스를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 시행령 제2조(표장의 구분) 참고 * 서비스표·상표서비스표 출원 불가(예외: 2016.9.1. 이전 출원의 변경 출원)
2. 증명표장의 상표 등 중복 등록 불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u>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u>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②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u>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u>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①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u>지정상품에 상관없이</u> 동일·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②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u>지정상품에 상관없이</u>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3.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및 심판청구 기간 연장 *법 제17조제1항(기간의 연장 등)	교통이 불편한 자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함	①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기회 제공 ②교통이 불편한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4. 무효처분의 취소 *법 제18조제2항(절차의 무효)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취소 가능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취소 가능	2016.9.1. 시행당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법 적용
5.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상표출원 등록 금지 규정 삭제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상표권 소멸 후 1년내 타인 출원 시 원칙적으로 등록거절	삭제	2016.9.1.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2016.9.1.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 신법 적용
6.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출원 등록 금지 *법 제34조제1항제21호(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였던 자의 국내 출원시 이의신청 및 정보제공에 의해 거절(5년 이내 취소심판 제척기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부등록사유로 이동하고, 오류로 등록된 경우 상표 등록취소사유에서 무효사유로 변경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7.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판단시점 변경 *법 제34조제1항제7호(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 존재하기만 하면 등록여부결정시에 해당 상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절	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 존재하였으나, 등록여부결정시에 소멸되었다면 등록 가능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8.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추가 *법 제40조제2항(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①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② 오기의 정정 ③ 불명확한 기재의 석명 ④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그 밖에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시행규칙(시행규칙 제33조)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9.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 수정 시 수정정관의 제출의무 신설 *법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출원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수정정관의 제출의무가 임의규정으로 규정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을 수정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2016.9.1. 이후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 적용
10. 직권보정범위 확대 *법 제59조(직권보정 등)	지정상품 및 류구분만 직권보정 가능	①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 으로 출원인이 명백히 잘못 기재한 것은 직권보정 가능 ② 직권보정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시 출원공고결정 취소 간주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11. 출원 및 등록의 회복기간 확대 *법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에 관한 절차 또는 등록료 납부기간 및 보전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및 추가납부기간) 14일, 경과 기일 6개월	회복기간(및 추가납부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그 경과기일을 1년으로 연장	2016.9.1. 이전에 2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부칙 제6조)
12. 상표공보에 등록공고 실시 *법 제82조제3항(상표권의 설정등록)	신설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권자의 성명 등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사실을 공고	2016.9.1. 시행 이후 상표권 설정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상표의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법 제90조제1항제1호(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u>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u> 해야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u>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u> 했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14.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법 제119조제5항(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이해관계인만 청구가능 ② 심결확정 시 확정시점에 상표권 소멸	① 누구든지 청구가능 ② 심결 확정시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권리 소멸	2016.9.1. 이후 청구된 심판사건에 적용
15. 지정상품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제도의 도입 *법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상표가 다류인 경우 일부 지정상품류만을 대상으로 청구하더라도 전체류에 대한 청구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일부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016.9.1. 이후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